KOSHA GUIDE

C - 95 - 2014

하여야 하며 자재가 이동하는 경로 및 하부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한다.

- (5) 작업시작 전에 작업통로, 안전방망,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설치상태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흙막이 지보공과 측면에 밀착되는 띠장과의 연결은 원칙적으로 볼트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 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및 관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계도서 이상의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.
- (7) 띠장의 하단에 보걸이 또는 띠장 받침대를 선 시공하고, 띠장을 거치후 볼 트를 체결한다.
- (8) 띠장 받침대는 전 구간에 걸쳐 수직 수평 모두 직선을 이루도록 시공해야 하며, 받침대의 지지력은 띠장의 자중과 상재하중 내하력을 견디도록 견고 히 시공해야 한다.



<그림 4> 띠장 홈메우기

- (9) 다음단계의 PS 강선 긴장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띠장의 편심,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띠장 배면에 강재, 시멘트 그라우팅 등을 이용한 홈메우기 등을 사전에 시공하여야 한다. 강재, 시멘트 그라우팅 등을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이상을 확보하여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.
- (10) 또한 PS 강선 긴장작업 중 띠장의 뒤틀림, 넘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름 브라켓(Braket)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